

[별첨2]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주요 내용

1 감독지침의 성격 및 적용대상

- **(성격)**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존 해석은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 **(적용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이하, “가상자산” 또는 “토큰”)

- ①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사용
- ② 암호화(cryptography)를 통해 보안
- ③ 대체가 가능(Fungible)

가상자산의 정의 및 적용대상

가상자산법(안) 상 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감독지침 적용대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암호화되어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중 대체가 가능한 것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도 감독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금융위, '23.2.6)의 토큰 증권과 동일

토큰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금융위 보도자료, '23.2.6)

1. 토큰 발행 기업의 회계처리

- **(현행)** 발행자가 토큰의 개발부터 발행까지 발생하는 여러 사건 및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
 - (개발) 토큰 개발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의 자산화 여부
 - (발행) 다양한 경제적 사건*에 따라 발행하는 토큰의 회계처리 및 토큰과 직접 관련된 원가가 발생할 경우 자산화 여부
 - * 사전판매, 무상배포, 용역대가, 개발 팀원에게 제공 등
 - (유보) 개발완료되어 발행 후 유보된(Reserve) 토큰의 자산성 여부
- ➔ **(개선)** 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발생원가 및 내부유보 토큰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검토
 - * 가상자산의 이용가치는 플랫폼 활성화,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좌우
→ 백서상 발행회사에게 이에 대한 추가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일반적

(1) 개발

- (개발원가) 플랫폼 및 토큰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개발활동이 K-IFRS 제1038호 상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비용으로 회계처리
 - * 개발활동: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제품·공정·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2) 발행

- (직접 관련원가) 발행자 스스로 발행한 토큰이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와 직접 관련된 원가 또한 비용으로 회계처리
 - * ① 토큰이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나타내며 ② 이 토큰을 기업이 통제해야 함
- 유틸리티 토큰은 미래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효익을 창출*하므로, 토큰만 개발된 '현재'시점에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어려움
 - * 발행한 토큰에서 약속한 의무(재화나 서비스 제공)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

□ (판매) 토큰 판매 시 대가를 미리 수령하였다도 발행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식별된 관련 의무*를 반드시 모두 이행한 후 수익을 인식

* 가령 1)가상자산을 이전만 하면 되거나, 2)플랫폼까지 구현해야하거나, 3)구현된 플랫폼 내에서 발행자가 재화·용역을 이전하겠다는 다양한 수준·단계의 의무가 존재

→ 가상자산의 이용가치는 플랫폼 활성화,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좌우되는만큼 백서상 발행회사에게 이에 대한 추가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일반적

- 백서 또는 다른 약정 상 약속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토큰 발행 시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식별해야 함
- 발행시점에 수행의무를 충분·명확히 식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계약변경에 의한 수행의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백서의 변경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변경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오류로 간주
- 명확한 증거가 없이 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하여 부채로 인식한 이전대가를 수익 인식하기 매우 어려움

□ (판매 이외) 판매 이외에 토큰을 유통*시킨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 의무를 이행한 이후 거래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

* 무상배포(Air drop), 용역대가, 개발 팀원에게 제공 등

(3) 발행 후 내부 유보(reserve)

□ 발행 후 내부유보 토큰은 직접 관련원가가 발생한 극히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 내부유보 토큰의 유보현황 및 기중 사용내역을 주석 공시 의무화(별첨1 참조)

(4) 토큰증권

□ 발행한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해당 기준서를 적용

○ 기업이 발행한 토큰 증권은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고려, 부채인지 자본인지 결정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금융부채 분류가능성이 큼

-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②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토큰 보유 기업의 회계처리

- **(현행)** IFRS 해석위원회 논의 대상 토큰* 이외에 다른 토큰을 보유한 경우의 회계처리가 불분명

*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본다는 IFRS 해석위원회 논의('19.6월)는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간 계약을 생기게 하지 않는 지불형 토큰을 대상으로 하였음

- ➔ **(개선)** 토큰 분류 별 취득 목적에 따른 적용 기준을 안내하고, 이에 따른 최초 인식, 후속 측정 및 손상 평가,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화

< 토큰의 종류별 회계처리 개요 >

토큰 등의 분류	토큰 취득목적	계정 분류	적용 기준서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재고자산	제1002호 '재고자산'
	판매 목적 외	무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
토큰 증권	투자 목적	금융상품	제1109호 '금융상품'

(1) 최초 측정

- 취득 방식과 경로를 고려하여 토큰의 최초 취득원가를 결정

- ① (유상취득) 구입가격에 취득을 위해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
- ② (플랫폼 운영, 채굴) 운영 또는 채굴 비용 중 토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토큰 취득금액으로 인식
- ③ (용역 제공대가) 토큰의 시세를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할 경우 토큰의 시세로, 추정이 어려운 경우 제공한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참고하여 측정
- ④ (무상수령) 취득원가를 영(0)으로 인식

* 가치 변동성 및 경제적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

- ⑤ (토큰증권)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

(2) 후속측정 및 손상평가

□ 취득한 토큰의 분류에 따른 적용 기준에 따라 후속 측정

- ① (재고자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실현가능가치 - 매각부대비용)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 예외적으로, 중개기업(사업자 등)이 토큰을 취득한 경우에는 ①국제 상품 거래소에서 일반상품(Commodity)으로 취급되고 ②단기간에 처분이 가능한 경우 순공정가치(공정가치 - 매각부대비용)로 측정
- ② (무형자산) 같은 유형의 토큰에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선택 가능
 - 재평가모형 적용 시 원가보다 상승 변동 분은 기타포괄손익, 원가보다 하락 변동 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③ (금융자산)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후속 측정

(3) 처분

-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익은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영업손익, 그 외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 다만, 판매 목적 外로 취득했다라도 정관, 사업목적, 금액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손익으로 분류할지 고려

< 토큰의 종류별 영업손익 표시 사례 >

토큰 등의 분류	토큰 취득목적	계정 분류	재무제표상 손익 표시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재고자산	영업손익(매출 등)
	판매 목적 外	무형자산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
토큰 증권	투자 목적	금융상품	〃

3.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 **(현행)**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가 고객 위탁 토큰 및 자기 소유 토큰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불분명

* 가상자산 사업자의 주된 업무 : ①가상자산 매매거래 중개와 ②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전자지갑 서비스 등

➔ **(개선)** 고객 위탁 토큰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재무제표 인식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주식 공시 의무화를 안내하고 자기 소유 토큰의 보유 목적 및 영업 행태에 따른 회계처리를 명확화

(1) 고객 위탁 토큰의 회계처리

□ 위탁 토큰에 대한 고객과 사업자 중 경제적 통제*를 누가 하는지 판단하여 사업자의 관련 자산·부채의 인식 여부를 결정

*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

○ 경제적 통제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하나의 지표가 경제적 통제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것은 아님

①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②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③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 사업자는 위탁 토큰 관련 추가 정보*를 주식으로 공시(별첨1 참조)

* 1)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시장가치 정보 및 산정에 사용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
2) 해킹 등 유의적 위험, 불확실성 및 위험관리활동에 대한 내역

(2) 자기 소유 토큰의 회계처리

□ 토큰 보유 목적(사업 목적) 및 영업 행태에 맞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① (일반)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매도·중개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

-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후속적으로 회계처리

- ② (매도·중개 목적) 중개기업인 사업자가 일반상품(Commodity)인 토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
 - 순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고 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 인식
- ③ (영업에 사용) 통상적인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인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
 -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로 후속 측정

< 사업자의 자기 소유 토큰의 회계처리 >

보유목적(영업 행태)	계정 분류	후속 회계처리	비고
일반	무형자산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규제 등으로 인해 매도·중개 불가
매도·중개 목적	재고자산	순공정가치 측정	중개기업, 일반상품
영업에 사용	재고자산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판매를 위해 보유, 용역 제공에 사용

(3) 사업자의 토큰 처분 시 회계처리

□ 「토큰 보유기업」의 토큰 처분 시 안내사항을 참조 (☞ 3.(3))

4. 가상자산 관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 **(현행)** 가상자산은 그 분류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나, 상황별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불분명

< 토큰의 분류에 따른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상황 >

분류	상황	참조
무형자산	재평가모형 적용(공정가치 측정)	4.(1)
	원가모형 적용 시 손상의 회수가능액 산정(순공정가치 측정)	
중개기업이 보유한 일반상품인 재고자산	순공정가치로 측정(공정가치-매각부대원가)	4.(2)
사업결합	취득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토큰 증권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 **(개선)** 가상자산의 분류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측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화

(1) 무형자산_재평가모형

□ (일반) ①활성시장*이 있을 경우에만 ②활성시장을 기초로 공정가치로 측정 가능

*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

① (활성시장) 활성시장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 거래소에 상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활성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님

② (활성시장 기초) '유사한(동질적인, homogeneous)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공정가치 투입변수로 사용 가능

* 같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성되고, 유사한 토큰 간 정상적인 거래 규모와 빈도가 충분하여 신뢰성 있는 교환비율 존재하는 경우

□ (공정가치) 측정일 현재 ①접근 가능한 ②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는 ③시장참여자 사이의 ④정상거래로 자산이 교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

① (접근 가능) 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거래 가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격을 투입변수로 공정가치 측정 불가

* 다양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사이트상의 가격은 **일종의 평균개념**이므로 그 가격 그대로 거래할 수 없다면, 접근 가능한 가격이 아님

② (시장) 접근가능한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공시가격 사용

*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빈도가 가장 잦은** 시장

**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받는 금액을 최대화**(거래원가와 운송원가를 고려)하는 시장

③ (시장 참여자) 특수관계자 거래 또는 자전 거래 등으로 형성된 공시 가격은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될 수 없음

④ (정상거래)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격은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 i) 측정일 전 일정기간동안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거래를 위한 충분한 시장 노출이 없었음
- ii) 매도자가 하나의 시장참여자에게 가상자산 마케팅활동을 수행
- iii) 매도자가 파산이나 법정관리 상태에 있음(재무적 어려움)
- iv) 매도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매도할 것을 요구받음(매도가 강제)
- v) 거래가격이 같거나 유사한 가상자산의 최근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거래가격이 예외적임

□ (측정) 동일·유사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공시가격 존재 여부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상이*

* 동일한 또는 유사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모두 없다면 무형자산을 원가로 측정

○ (동일한 가상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 존재시) 측정일에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공정가치 투입변수로 사용

- 다만, 활성시장이 존재하나, 기업이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시장과는 다르다면 전송원가(운송원가)를 투입변수로 고려

○ (유사한 가상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 존재시) 동일한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없고, 유사한(동질적인) 가상자산의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한다면 이를 조정하여 공정가치 투입변수로 사용

- 유사한 가상자산과의 신뢰성 있는 교환비율을 고려하고 전송원가 등을 투입변수로 하여 측정

(2) 무형자산 이외

□ (측정)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 (가치평가기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수익접근법 등 사용

- (시장접근법) 유사한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그 밖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사용

- (원가접근법) 가상자산을 대체할 때 현재 필요한 금액(현행대체원가)에 진부화를 반영

- (수익접근법) 미래 금액(현금흐름, 수익, 비용)의 현재 할인된 금액